

# 부패행위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제 정 2019. 10. 2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진흥원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진흥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는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진흥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

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진흥원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및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진흥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① 원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제7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④ 책임관은 신고가 신고대상 및 내용,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관은 필요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 다른 감사인에게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0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2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

지 못한다.

**제15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원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게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및 보상)** ① 원장은 신고자의 유효한 사실자료 제보에 의하여 부패행위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효한 사실자료 제보란 신고자의 제보내용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를 말한다.

**제20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통고처분·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진흥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100분의 20이내로 하되 1천만원 이하로 한다.
- ③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의 1에 따라 산정하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진흥원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③ 신고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원상회복 등을 위해 치료·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 ④ 보상금 지급액은 별표의 2에 따라 산정하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포상·보상심의위원회)** ① 제18조 내지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포상·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감사부서, 인사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과 포상 또는 보상금 지급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고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보상금 신청 등)** ① 이 지침에 의한 신고자는 위원회에 별지서식 제4호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거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진흥원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보상금 지급사유의 존재, 진흥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등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의견이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회계담당부서에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지급을 의뢰한다.
- ⑥ 회계담당부서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신분과 지급내용 등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신고 경합 시 처리)**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가액 또는 포상가액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보상금은 진흥원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정도 등을, 포상금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제26조(지급제한 및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없이 종결 처리된 건의 경우
4. 외부 사정기관 및 진흥원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4. 동일한 내용으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6. 포상 및 보상을 목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8.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9. 기타 진흥원 심의결과 포상 또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착오 등의 이유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7조(징계 등)** ① 위원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2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위원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신분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침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 부 칙(2019.10.29)

이 지침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기준

1.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 포상기준

가.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지급한도액 : 최대 1천만원)

금품수수 신고 금액	포상금 지급기준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1백만원 이하	10만원 + 10만원 초과금액×(20/100)
1백만원 초과~5백만원 이하	28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10/100)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68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5/100)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93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3/1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2/100)
1억원 초과	313만원 + 1억원 초과금액×(1/100)

※ 조사·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나. 금품수수 자진신고 시 : 신고금액의 20/100 이내(지급한도액 : 최대 1천만원)

※ 자신과 관련된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에 포상금 지급은 행위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자진신고 시에 한하며, 금품을 먼저 요구하였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2. 신고로 인한 진흥원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 보상 및 포상기준(지급한도액 : 최대 3천만원)

수입증대(비용절감)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10/100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백만원+1천만원 초과금액×5/1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백만원+5천만원 초과금액×3/100
1억원 초과	4백5십만원+1억원 초과금액×1/100

3. 중복시의 보상기준 등

가.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나.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접수시점의 차이 없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의거하여 지급



(별지 제2호 서식)

## 비밀준수서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번호 :

위 본인은 내부공익신고,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의 확인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신고자, 협조자 및 관련 사실 일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을 누설할 경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며, 신고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행동강령책임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패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p> <p>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조리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p> <p>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p>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행동강령책임관 귀하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상세 지급기준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내 별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기준' 참조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http://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